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4. 7.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①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24. 8. 1. 시행 예정)	p.1
②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 동시포장 허용('24. 8. 1. 시행 예정)	p.2
③ 자유무역지역 내 사용소비신고 허용기준 확대('24. 9월 시행 예정)	p.3
④ 유통이력 신고기한 연장 ('24. 9. 1. 시행 예정)	
⑤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에 따른 제반절차 마련('24. 7. 1. 시행)	p.1
⑥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물품 확대('24. 4. 4. 시행)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⑦ 지정면세점 디지털 신원확인 방식 확대('24. 8월 시행 예정)	p.4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 방법 개선('24. 8월 시행 예정)	
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24. 3. 22.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⑩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시기 명확화('24. 7. 1. 시행)	p.5
⑪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제도 폐지('24. 8월 시행 예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⑫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24. 8. 29. 시행 예정)	p.6
--	-----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제35조의2) ☐ 수출가격 200만원(FOB 기준) 이하	☐ 간이수출신고 허용 <u>기준금액 상향</u> ☐ 수출가격 <u>400만원(FOB 기준)</u> 이하

< 사 례 >

개정전	K사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해 200만원 단위로 간이수출 신고를 하거나 일반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업무 부담
개정후	K사는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대부분을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업무 부담 해소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 **【기대효과】**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 **【시행일】** '24. 8. 1. 시행 예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②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 동시포장 허용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제51조) ☐ < 신 설 >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u>동시포장 허용</u> ☐ <u>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u> 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u>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는 근거 신설</u>

< 사 례 >

개정전	• 동일한 해외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임에도 수출자가 다른 경우 동시포장을 할 수 없어, 수출신고건별로 개별 포장하여 발송해야 함으로써 배송 불편 및 물류비용 부담
개정후	• 해외 구매자가 동일한 경우 간이수출신고(제35조의2제1항제2호) 건은 동시포장하여 배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송 편의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기대효과】**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 ‘동시포장’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 **【시행일】** '24. 8. 1. 시행 예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③ 자유무역지역 내 사용소비신고 허용기준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용소비신고* 대상(제7조의2) *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화물의 포장을 해체하여 분할·병합 가능 • 수량단위 화물관리 가능 물품 • <신설>	☐ <u>대상 확대</u> • <현행과 같음> • <u>중량단위</u> 화물관리 가능 물품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부산신항 인근 창고에 반입한 이후 전량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소분작업을 거쳐 전국 대리점 및 물류센터 등으로 배송하고 있었음
개정후	• A사는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수입 커피 원두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단위로 재고관리를 하면서 매 반출건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관세납부 자금부담이 완화됨

☐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수입화물 복합물류 활성화로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 【시행일】 '24. 9월 시행 예정(「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개정)

4 유통이력 신고기한 연장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88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유통이력 신고 기한 연장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신고물품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례 >

개정전	‘L’사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판매내역 등을 신고
개정후	‘L’사는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유통이력 일괄 신고 가능

☐ 【기대효과】 유통이력 신고 기한 연장을 통해 유통이력신고의무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 【시행일】 '24. 9. 1. 시행 예정(「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5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에 따른 제반절차 마련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과세정보 전송대상 신설(제38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 * 현재는 해당자가 없어, 향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등재 예정
< 신 설 >	□ 과세정보 전송 요구 및 철회 방법 마련(제39조) 통계교부대행자가 구축한 플랫폼으로 전송 요구 또는 철회 요청 가능
< 신 설 >	□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처리 방법 신설(제40조) - 통계교부대행자는 과세정보의 전송·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 - 통계교부대행자는 과세정보 전송대상, 항목 등을 사전협의 후 플랫폼에 반영
< 신 설 >	□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시 협의 의무 신설(제41조) 통계교부대행자의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등에 의문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협의 필요

〈 사 례 〉

개정전	•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내려받은 잠정가격 신고 자료를 A관세사에게 전달, A관세사는 기한 내에 확정가격신고 이행
개정후	•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1년 주기로 A관세사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A관세사는 전송받은 S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이용해 곧바로 확정가격신고 이행

- ☐ **【기대효과】**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한 세부절차 마련으로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지원
- ☐ **【시행일】** '24. 7. 1. 시행(「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6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물품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등) 8종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1종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확대 ○ 청주, 탁주 등 9종* 지정·고시 * 청주, 탁주, 양조식초, 백색 시멘트,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인조 섬유 티셔츠, 보건용 마스크 등

< 사 례 >

개정 전	일본으로 탁주를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인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개정 후	일본으로 탁주를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등) 제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1종을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 발급 간소화를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시행일】 '24. 4. 4 시행(「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2

7 지정면세점 디지털 신원확인 방식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면세물품 판매(제15조) - 지정면세점은 면세물품 판매 시 구매자의 신분증 및 탑승권 확인 <신설>	☐ <u>구매자의 신원확인 방법 확대</u> <현행과 같음> <u>디지털 신원인증 방식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추가</u>

< 사 례 >

개정전	여행자 A씨는 지정면세점에서 탑승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면세물품을 구매
개정후	여행자 A씨는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매 시 바이오 인증(손바닥정맥)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해져 탑승권, 신분증을 챙겨야하는 수고를 덜게 됨

☐ **【기대효과】**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 제고 및 면세산업 활성화

☐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개정)

8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 방법 개선

(심사정책과, 042-481-776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세가격 결정방법(일반·특수)의 사전심사 신청 우편, 방문 등 신청	☐ 신청 방법 개선 (원칙)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 사 례 >

개정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A사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일반용)와 첨부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우편으로 신청
개정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A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관련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산으로 신청

☐ 【기대효과】 납세자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에 기여

☐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9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C/O 신규 발급 제출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 C/O 신규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생략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한 제출 생략)
☐ C/O 재발급 제출서류 ○ C/O 재발급 신청서 ○ 신청사유서	☐ C/O 재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 C/O 재발급 신청서 (※ 신청사유서 제출 생략)
☐ C/O 정정발급 제출서류 ○ 정정발급 신청서 ○ 당초 발급받은 원본 C/O ○ 신청사유서 ○ 정정사유 입증 서류	☐ C/O 정정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 정정발급 신청서 ○ 정정사유 입증 서류 (※ 원본 C/O 및 신청사유서 제출 생략)

< 사 례 1 >

개정전	S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
개정후	S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

〈 사 례 2 〉

개정전	A사는 원산지증명서 훼손,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를 작성한 공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정정발급 시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 C/O를 회수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음
개정후	A사는 원산지증명서 훼손,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정정·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는 것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정발급 시에도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 C/O를 회수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발급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정정·재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 제고

□ **【시행일】** '24. 3. 22 시행(「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4. 5. 3 시행(「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제10항)

10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등록대상 및 요건(제3조)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장에게 등록	☐ <u>등록시기 명확화</u>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장에게 <u>다음해 3월말까지 등록</u>
<신 설>	☐ <u>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이행 사전 안내</u> (제3조의2) 등록기한 2개월 전에 등록이행 사전 안내

< 사 례 >

개정전	등록 대상인 A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시기·기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걱정하는 상황 발생
개정후	A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다음해 3월까지 등록 신청 완료 및 등록 의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

☐ **【기대효과】**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및 업체 등록 부담 경감

☐ **【시행일】** '24. 7. 1. 시행(「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1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특수법인 설립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76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운영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및 제15조~제20조)	< 삭 제 >
☐ 운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제21조) • 운영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마련 • 관세정보원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 권한 추가

< 사 례 >

개정전	• 관세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A사를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위탁
개정후	•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해당 기관이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전담하도록 함

- ☐ **【기대효과】** 관세정보시스템에 운영 전담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 ☐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2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부호검증 체계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 시 통관 가능	☐ <u>부호검증 체계 강화</u>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와 신고서 등에 기재한 <u>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u>하는 경우에만 통관 가능

< 사 례 >

개정전	오픈마켓 직구 플랫폼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는 과거에 구매대행을 요청했던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수집 후, 구매대행업자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정 수입함
개정후	오픈마켓 직구 플랫폼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는 과거에 구매대행을 요청했던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수집 후, 구매대행업자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정 수입을 시도하였으나, 부호·이름·전화번호가 발급 정보와 모두 일치하지 않아 통관 불가

☐ **【기대효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개인 통관 정보 보호 강화

☐ **【시행일】** '24. 8. 29. 시행 예정